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1117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김재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울

담당변호사 김재영

변 론 종 결 2023. 6. 20.

판 결 선 고 2023.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0. 6. 1.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0. 6. 10. 접수 제58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1. 14.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4. 8. 4.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는데, 2014. 8. 4. 무렵 원고가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을 위 회사의 이사 C, 감사 E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2. 30.경 C, E과 사이에 추후 원고가 80,000,000원을 위 회사에 출자하면 C,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30%를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2020. 2. 12. 위 합의에 기하여 C, E에게 각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들로부터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 120,000주의 30%에 해당하는 36,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이들로부터 위와 같은 주식양도사실이 반영된 주주명부도 교부받았다.

그러나 C, E은 2020.경 원고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F에 D 소유의 관광버스 7대를 매각하였고, 결국 D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사가 되어 버렸다. 원고는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5.경부터 위 2020. 2. 12.자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C 또는 E에게 원고가 투자한 위 합계 80,00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C은 2020. 12. 22.경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와 원고가 반환받을 돈을 정산하여 52,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해 위와 같은 약정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원고의 주장이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이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

나. C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통모하여 2020. 6.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20. 6. 10.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C, E 또는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D는 2015. 12. 30. 원고 또는 G가 C, E 또는 D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면 C, E 또는 D는 원고 또는 G에게 D의 주식 30%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0. 2. 12. C, E에게 각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C, E 사이에 2020. 2. 12. C, E이 원고에게 D의 주식 36,000주를 양도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같은 날 원고가 D의 주식 36,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D의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원고, C, H은 2020. 12. 22. '원고는 C, E에게서 받을 돈 6천만원 중에 H 기사가 D에 정산해줘야 될 팔백만원을 차감하고 받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D는 2020.경 위 회사 소유의 관광버스 7대를 주식회사 F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만으로 C이 주식매매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0. 6. 20. C에게 80,000,000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현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동[도로명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철근콘크리트지붕

22층 아파트

1층 $418.12m^2$ 2층 ~ 4층 각 $416.68m^2$ 5층 ~ 22층 각 $409.96m^2$ 옥탑1 $59.92m^2$ 옥탑2 $61.04m^2$ (연면적 제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대 $16,520.9m^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3.26m^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520.9$ 분의 35.96 -끝-

